

#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 이 내용은 2005년도와 달라지는 주요시책을 정리한 것임.
- 2005. 12월 현재 관계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산 림 청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 목 차

## □ 정책홍보관리관실

- 1. 국가산림자원 조사 ..... 3
- 2. 임가경제조사 ..... 3

## □ 산림정책국

- 1. 영림계획 제도 개선 ..... 4
- 2.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개선 ..... 4
- 3. 영림기술자 관리 강화 ..... 5
- 4.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6
- 5. 작업로·운재로 복구설계서 제도 개선 ..... 6
- 6.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6
- 7. 타부처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 대행 ..... 7
- 8. 공동산림사업 시행 ..... 7
- 9. 국유림 이용 ..... 7
- 10. 사유림 매수 확대 ..... 7
- 11.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 8
- 12. 국유재산 실태조사 ..... 8

- 13.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개선 ..... 8
- 14. 국유림영림계획 정보화시스템 운영 ..... 9
- 15. 밤 수출이력 관리비 지원 ..... 9
- 16. 신규 수출상품 개척비 지원 ..... 9
- 17. 해외조림 개발조사비 지원 ..... 9

## □ 산림자원국

- 1.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 시행 ..... 10
- 2. 임업기술지도원 제도 개선 ..... 10
- 3. 산촌개발사업 개선 ..... 10
- 4. 산림사업법인 관리 ..... 11
- 5.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 ..... 11
- 6. 자연휴양시설 타당성 평가 ..... 11
- 7.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제도 ..... 12
- 8. 국민참여의 숲 지정·운영 ..... 12
- 9. 가로수 조성·관리 ..... 12
- 10. 도시림 조성·관리 ..... 13
- 11. 임산물생산단지 사업 지원 ..... 13

12. 관상수생산기반 지원 .....	13
13. 임산물 표준규격 지원 .....	13
14.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 개선 .....	14
15. 조림사업 인부임 및 단비 조정 .....	15
16. 산림·산촌클러스터 사업 .....	15
17. 리기다소나무 갱신 조림 .....	15
18. 맹아갱신사업 확대 .....	15
19. 공익적 숲가꾸기 국고보조 확대 .....	16
20.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확대 ...	16
21. 산주 직접실행지의 위탁설계·관리 제도 도입 ...	16
22. 숲가꾸기 통합실시설계 제도 도입 .....	17
23. 사이버 산림경영지도시스템 운영 .....	17
24.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차등화 .....	17

**□ 산림보호국**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	18
2. 보안림의 종류 통합 .....	18
3. 보안림의 지정 해제 강화 .....	18

4. 사방사업 수익자 부담금 .....	18
5. 자생식물단지 조성 .....	19
6. 수목원·박물관·생태숲 사전 타당성 심사 .....	19
7.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 .....	19
8.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	19
9.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	20
10.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정착 추진 .....	20
11. 산불진화헬기 야간 이동 .....	20
12.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 실행 .....	21
13.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	21
14. 국유임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확대 .....	21
15. 임도 지장목(소나무) 파쇄 조치 .....	22
16. 해안방재림 조성 .....	22
17. 임도 평가시기 개선 .....	22
18. 소나무류 이동단속 .....	22
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개선 .....	23
20. 산림병해충 방제 .....	24

##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산림시책

### □ 정책홍보관리관실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 국가산림자원 조사	○ 조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사과	○ 조사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위탁 실시	○ 시 책 (2006.1.1)	○ 산림과학원 현지조사 인력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산림 조합에 위탁 조사	정보통계 담당관실 (042- 481-4166)
	○ 조사주기 - 10년 순환조사	○ 조사주기 - 5년 주기 공표	”	○ 통계의 현실 반영도 제고	”
2. 임가경제조사	○ 표본임가 500가구	○ 표본임가 1,000가구로 모집단 확대 실시	○ 시 책 (2006.1.1)	○ 임가경제조사의 대표 성 확보	정보통계 담당관실 (042- 481-4166)

## □ 산림정책국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 영림계획 제도 개선	○ 영림계획	○ 산림경영계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2006.8.5)	○ 국민이 알기 쉽게 명칭 변경	산림정책과 (042- 481-4131)
	○ 모든 공·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 수립은 권장 사항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의무화	〃	○ 공유림의 산림 공익 기능 증진과 사유림 경영에 대한 선도 역할 강화	〃
	○ 영림계획은 영림기술 자가 작성, 단 임업후 계자·독립가는 자기 산림에 한해 작성	○ 산림소유자도 자기 산림에 대해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 산림경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작성 경비 절감	〃
2.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개선	○ 녹색자금 운용·관리 주체 - 산림조합중앙회장	○ 녹색자금 운용·관리 주체 - 산림청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2006.8.5)	○ 녹색자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	산림정책과 (042- 481-4284)
	<신 설>	○ 녹색자금관리단을 설립하여 녹색자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탁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2006.8.5)	〃	〃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3. 영림기술자 관리 강화	○ 영림기술자, 산림토목 기술자, 목구조기술자로 구분·운영	○ 산림기술자로 명칭 통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2006.8.5)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개편	산림정책과 (042- 481-4131)
	<신 설>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규정 마련 -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또는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	○ 산림기술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 산림 경영계획의 질적 향상 및 산림기술자의 위상 제고	”
	<신 설>	○ 산림기술자 교육 등 실시	”	○ 산림기술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산림 관련 기술발전 도모	”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4.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신 설>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채석허가, 토석채취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을 하거나 채취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지급	○산지관리법 제46조의 2 (2006 상반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불법 산지전용이나 불법 토석채취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산지정책과 (042-481-4141)
5. 작업로·운재로 복구설계서 제도 개선	○작업로·운재로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토목기술자가 복구설계서 작성 제출	○운재로·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를 산주가 직접 작성 제출	○운재로·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 기준 (2006.1.1)	○목재생산자 및 밤생산 농가 등 산림경영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지정책과 (042-481-4141)
6.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신 설>	○보전산지안에서 산촌개발사업 및 수목장림의 조성 가능	○산지관리법 제12조 (2006 상반기)	○낙후된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조성을 통해 산림훼손 방지	산지정책과 (042-481-4141)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7. 타부처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 대행	<신 설>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연접된 타부처 국유림 및 공·사유림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할 경우 경영대행하고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2006.8.5)	○산림소유자의 편의 도모 및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	국유림경영과 (042-481-4091)
8. 공동산림사업 시행	<신 설>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8.5)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지자체·단체 등의 참여와 투자 촉진	국유림경영과 (042-481-4091)
9. 국유림 이용	<신 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경우 국유림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006.8.5)	○지역균형발전 도모	국유림경영과 (042-481-4091)
10. 사유림 매수 확대	○다른 법률에 의해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또는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산림은 매수대상지에서 제외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산림도 매수대상지에 포함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2006.1.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산주의 민원해소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1.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신 설>	○ 국유림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 경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006.8.5)	○ 국유림에 대한 주요 산림사업 추진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유림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12. 국유재산 실태조사	○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	○ 잡종재산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행정·보존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 국유재산법 제46조 (2006.1.1)	○ 국유재산의 전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도모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13.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개선	○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할 경우 산지전용 허가(신고) 선행  ○ 산림법에서는 요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와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대부범위를 동일하게 제한	○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게 되면 산지전용 허가(신고)는 의제  ○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용도제한 폐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8.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8.5)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도모  ○ 소규모로 분산된 불요존 국유림의 적절한 활용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4. 국유림 영림 계획 정보화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방식이 데스크탑 형태이고, GIS가 지원되지 않는 단순 영림계획 수립 기능만 수행	○ 웹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림 계획수립, 평가, 정보분석, GIS 등의 기능을 갖춘 통합환경 시스템 구축·운영	○ 시 책 (2006.1.1)	○ 일선 담당자들의 사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실시간 자료 공유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림 경영 환경 구현	국유림경영과 (042- 481-4093)
15. 밤 수출이력 관리비 지원	<신 설>	○ 생산이력 관리된 밤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보조금 지원 (200원/kg)	○ 시 책 (2006.1.1)	○ 수출대상국 식품안전성 강화 정책에 대응	국제협력과 (042- 481-4085)
16. 신규 수출상품 개척비 지원	<신 설>	○ 수출 유망품목의 현지 상품화,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등 지원 (20백만원/품목)	○ 시 책 (2006.1.1)	○ 신규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육성으로 수출 확대 도모	국제협력과 (042- 481-4085)
17. 해외조림 개발 조사비 지원	<신 설>	○ 해외조림을 위한 산림자원개발 신고를 한 업체가 신규조림을 실시할 경우,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급(25천 원/ha)	○ 시 책 (2006.1.1)	○ 해외조림 활성화 도모	국제협력과 (042- 481-4088)

## □ 산림자원국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 숲가꾸기 설계·감리 제도 시행	○ 시범사업으로 96개 기관 시행	○ 50ha이상의 속아베기를 수반 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 감리제도 의무 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8.5)	○ 산림사업의 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숲가꾸기팀 (042- 481-4186)
2. 임업기술지도원 제도 개선	○ 임업기술지도원이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 보급	○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경영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산주에 대한 경영지도, 산림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조사 업무 등을 수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6.8.5)	○ 산림경영 지도업무의 강화 및 지도원의 사기진작 도모	경영지원과 (042- 481-4191)
3. 산촌개발 사업 개선	○ 농지전용허가  <신 설>  ○ 산촌개발사업 대상지를 착수 전년도에 예비 선정  <신 설>	○ 농지전용 신고  ○ 산촌개발 사업의 체험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50%)  ○ 산촌개발사업 대상지를 착수 전년도에 예비 선정하여 사전 준비  ○ 산촌개발사업 실행시 국유림 대부 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 37조 (2006.1.22)  ○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2006.1.22)  ○ 산촌개발사업 관리 요령 (2006 상반기)  ○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8.5)	○ 산촌개발에 따른 행정처리 및 기간 단축  ○ 주민부담 완화  ○ 산촌개발사업 추진 역량 함양  ○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에 기여	경영지원과 (042- 481-4193)  "  "  "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4. 산림사업 법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으로 규정</li> <li>○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조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규정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산림사업법인은 대행위탁에서 제외, 경쟁에 의한 사업 시행</li> <li>○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조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규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006.8.5)</li> <li>○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7조 (2006.8.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사업의 건전한 경쟁관계 유도</li> <li>○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조사, 영업정지, 취소 등 법인관리 강화</li> </ul>	경영지원과 (042-481-4195)  /
5.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	<신 설>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2006.8.5)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와 국민의 안전사고 대비	산림휴양 정 책 과 (042-481-4211)
6. 자연휴양시설 타당성 평가	<신 설>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8.5)	○자연휴양림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친환경적 시설 설치	산림휴양 정 책 과 (042-481-4211)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7.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제도	<신 설>	○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실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8.5)	○ 산림교육의 내실화 도모와 산림교육·문화 전문인력 양성	산림휴양정책과 (042-481-4215)
8. 국민참여의 숲 지정·운영	<신 설>	○ 국민들이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국유림을 산림교육 및 여가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에 국민 참여의 숲 조성·운영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006.8.5)	○ 국유림 숲가꾸기 등 국유림 경영에 국민 참여 확대	산림휴양정책과 (042-481-4215)
9. 가로수 조성·관리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실행	○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도로의 도로구역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을 가로수로 명정 -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하고 도로의 설계단계에서 부터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 -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8.5)	○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조성 확대 기반 마련	산림휴양정책과 (042-481-4217)

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0. 도시림 조성·관리	○ 산림기본법 제18조에 선언적 근거	○ 도시림 조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도시림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 -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6.8.5)	○ 도시림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및 도시생활공간 개선	산림휴양정책과 (042-481-4217)
11. 임산물생산단지 사업 지원	○ 생산기반시설 및 작업로 지원	○ 모노레일 지원 추가	○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1.1)	○ 기계화 작업에 의한 생산성 증가	임산물이용과 (042-481-4207)
12. 관상수생산기반 지원	○ 민간보조사업 (협회 지원)	○ 민간보조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협회, 지자체 지원)	○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1.1)	○ 정부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생산성 증가	임산물이용과 (042-481-4207)
13. 임산물 표준규격 지원	○ 15개 품목, 45개 규격	○ 17개 품목, 50개 규격	○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1.1)	○ 표준규격 유통 활성화	임산물이용과 (042-481-4207)

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4.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정책자금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 7 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자연휴양림, 해외산림투자, 산림조합육성, 임야매입(독립가·임업후계자)</li> </ul> </li> <li>- 4.0% : 6 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소득종합자금, 목가공시설지원, 유통센터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조림용묘목생산, 임업기계화</li> </ul> </li> <li>- 5.5% : 3 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이용가공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합판보드류사업</li> </ul> </li> </ul> </li> <li>○ 각 사업별로 분할 관리(16개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정책자금 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 5 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 숲가꾸기, 임도, 해외산림투자, 임야매입(독립가·임업후계자)</li> <li>※ 산림조합육성, 자연휴양림은 3.0%로 종전과 동일</li> </ul> </li> <li>- 3.0% : 6 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소득종합자금, 목가공시설지원, 유통센터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조림용묘목생산, 임업기계화</li> </ul> </li> <li>- 4.0% : 3 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이용가공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합판보드류사업</li> </ul> </li> </ul> </li> <li>○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1.1)</li> <li>○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의 저수익성과 장기성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li> <li>○ 하나의 종합자금으로 묶어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산림사업투자 활성화 도모</li> </ul>	경영지원과 (042-481-4191)

사 업 명	종 전	달라 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5. 조림사업 인부임 및 단비 조정	○조림사업 인부임단가 : 41,218원/1일/1인 ○큰나무공익조림 단비 하향 조정 : 14,791천 원/ha	○조림사업 인부임단가 : 44,700원/1일/1인 ○큰나무공익조림 단비 하향 조정 : 11,667천 원/ha	○시 책 (2006.1.1)	○현실단가 반영	산림자원과 (042- 481-4185)
16.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	<신 설>	○산림경영·소득·휴양·산촌 등 연관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산림·산촌클러스터 사업 추진 (시범 1개소, 기본설계 5개소)	○시 책 (2006.1.1)	○산림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추진 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산림자원과 (042- 481-4185)
17. 리기다소나무 갱신 조림	<신 설>	○리기다소나무림 벌채·갱신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리기다 갱신 조림 추진(4,000ha)	○시 책 (2006.1.1)	○쇠퇴하고 있는 리기다 소나무림을 친환경· 생태적으로 경제수종 으로 갱신	산림자원과 (042- 481-4185)
18. 맹아갱신사업 확대	○참나무류 벌채지역으로 ha당 1,200본정도 균일 하게 분포	○참나무림 및 혼효림 벌채지역 으로 매토종자의 자연발아율 을 갱신에 이용	○시 책 (2006.1.1)	○맹아력(움싹)과 매토 종자(埋土種子)의 자연발아력을 이용한 생태적 갱신사업 확대	산림자원과 (042- 481-4185)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9. 공익적 숲가꾸기 국고보조 확대	○ 국고보조 지원대상 숲가꾸기 산림 - 흉고직경 20cm 이하인 산림	○ 공익적 숲가꾸기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산림을 확대 - 흉고직경 30cm 이내인 산림으로 확대	○ 시 책 (2006.1.1)	○ 공익적 숲가꾸기 대상지 중 성립지에 대한 산주의 부담경감 도모	숲가꾸기팀 (042-481-4186)
20.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확대	○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은 숲가꾸기와 분리 실행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종의 확대 - 숲가꾸기 사업에 피해목 제거 추가 - 일자리창출 사업에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추가	○ 시 책 (2006.1.1)	○ 숲가꾸기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대 방지	숲가꾸기팀 (042-481-4186)
21. 산주직접실행지의 위탁설계·감리제도 도입	<신 설>	○ 산주직접 실행지에 대한 위탁설계 및 감리제도 도입 - 시·군별 위탁설계·감리업체를 운영	○ 시 책 (2006.1.1)	○ 산주 직접 실행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사업의 품질제고	숲가꾸기팀 (042-481-4186)

사 업 명	종 전	달라 지는 내 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22. 숲가꾸기 통합 실시설계 제도 도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 가능하도록 통합 실시설계 제도 실시</li> <li>- 복층림(숲가꾸기+조림), 숲가꾸기+송이산가꾸기 등</li> </ul>	○ 시 책 (2006.1.1)	○ 숲가꾸기 실시설계시 기타 산림사업을 함께 반영할 수 있어 산주의 만족도 제고	숲가꾸기팀 (042-481-4186)
23. 사이버 산림 경영지도시스 템 운영	○ 산주의 방문 및 전화를 통해서 상담	○ 온라인을 통한 1:1 컨설팅 등 산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 책 (2006.1.1)	○ 온라인을 통한 1:1 컨설팅 등 산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영지원과 (042-481-4191)
24.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차등화	<신 설>	○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이용요금 차등화	○ 시 책 (2006 상반기)	○ 비수기 가동률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	산림휴양 정책과 (042-481-4211)

## □ 산림보호국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강화	<신 설>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006.8.5)	○산림생태계보전으로 우리나라 고유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식물 자원화·산업화	산림보호과 (042- 481-4248)
2. 보안림의 종류 통합	○보안림의 종류 8종 - 토사방지, 생활환경, 비사방지, 수원함양, 어부, 보건, 풍치, 낙석방지	○보안림의 종류 6종 - 토석방지, 생활환경, 비사방지, 수원함양, 어부, 경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2006.8.5)	○지정 목적이 유사한 보안림의 종류 통합	산림보호과 (042- 481-4248)
3. 보안림의 지정 해제 강화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 해제시 협의절차 없음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에 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정 해제시 환경부장관 협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2006.8.5)	○제3종 수원함양 보안 림의 관리 강화	산림보호과 (042- 481-4248)
4. 사방사업 수익자 부담금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	○사문화된 법조문으로 폐지	○사방사업법 제18조 (2006 상반기)	○각종 부담금 규제 개선 방안 에 따라 조문 삭제	치 산 과 (042- 481-4271)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5. 자생식물단지 조성	○우리꽃길 조성 사업으로 자생식물 식재	○지속적이고 규모있는 자생식물 단지 조성(개소당 5ha기준)	○시 책 (2006.1.1)	○일회성에 그치는 우리꽃길 조성 사업에서 지속적이고 규모있는 자생식물단지 조성 추진	산림보호과 (042-481-4248)
6. 수목원·박물관·생태숲 사전 타당성 심사	○자체심사(지자체)	○자체심사 후 수목원진흥위원회 심사	○시 책 (2006.1.1)	○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여부의 사전 심사로 보조금 이월 방지 및 사업성 과 거양	산림보호과 (042-481-4248)
7.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	○시·군, 관리소 평균 20명씩 일률적으로 배분	○기관 평균 30명씩 배분하고 인원 배분기준을 산불위험도에 따라 구분 (3,940→5,910명) ※ 팀장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책 (2006.1.1)	○산불 예방 및 진화 전문인력 확충에 의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자원 배분에 의한 활용도 증진	산불방지과 (042-481-4257)
8.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신 설>	○내화수림대 조성 (2,800ha/18억원) ○산불진화 진입도로 시설 (20km/24억원) ○취약시설 소화전 설치 (3개소/1.6억원)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472ha/3.5억원)	○시 책 (2006.1.1)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 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산불방지과 (042-481-4255)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9. 산불방지 통합 시스템 구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li> <li>○산림청 상황실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li> <li>○산불진화 시뮬레이션 개발(1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책 (2006.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진화 능력 제고</li> </ul>	산불방지과 (042-481-4257)
10. 산불현장 통 합지휘체계 정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에 대한 구속력 약화로 산불방지 공조 체계 구축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현장 통합지휘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유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2006.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역할 정립에 의한 공조체계 구축</li> </ul>	산불방지과 (042-481-4257)
11. 산불진화헬기 야간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출전, 일몰후에는 산불진화헬기 비행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진화헬기에 나이트비전(Night Vision)을 장착하여 일출전·일몰후 1시간 동안 야간이동 비행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책 (2006 상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현장 야간이동으로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 실시</li> </ul>	산불방지과 (042-481-4257)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2. 산림유역 관리 사업 확대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년 설계·시공</li> <li>○ '05사업실행 : 5개소 - 사업단비 : 2,250백만원</li> <li>○ '07실시설계 : 19개소 - 설계비 : 1억원/개소 - 사업비 : 2,250백만원</li> <li>○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설계, 2년 시공으로 전환</li> <li>○ '06사업실행 : 7개소 - 사업단비 : 2,250백만원 - 1차년도('05) : 설계완료 - 2차년도('06) : 1차조성 - 3차년도('07) : 2차조성</li> <li>○ '07년 실시설계 : 29개소 - 설계비 : 65백만원/개소 - 사업비 : 15~22.5백만원 ※ 현지여건에 따라 사업비 차등 적용 설계</li> <li>○ 난이도가 높은 개소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감리 실행</li> </ul>	○ 시 책 (2006.1.1)	○ 현지여건에 알맞은 설계시공으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완벽한 조사 설계 및 시공	치 산 과 (042- 481-4271)
13.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신 설>	○ 사방댐, 야계사방 대상지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 실시	○ 시 책 (2006.1.1)	○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질적 향상 도모	치 산 과 (042- 481-4271)
14. 국유임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확대	○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 ('05) 1,100km	○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 위탁 확대 실행 - ('06 계획) 2,100km	○ 시 책 (2006.1.1)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도 유지·관리 도모	치 산 과 (042- 481-4275)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5. 임도 지장목 (소나무)파쇄 조치	○임도 편입용지 내 소나무 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제재소에 공급	○임도 예정 노선 편입용지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여는 전량 파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	○시 책 (2006.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	치 산 과 (042- 481-4275)
16. 해안방재림 조성	<신 설>	○해안변에 중·대묘를 식재하여 다양한 숲을 조성	○시 책 (2006.1.1)	○지진해일 등 재난 방지 및 국토보전과 경관 증진	치 산 과 (042- 481-4271)
17. 임도 평가 시기 개선	○전년도 사업지를 대상 으로 10~11월에 임도 평가	○매년 10~11월에 업무폭주로 인하여 5월에 임도평가 실시	○시 책 (2006.1.1)	○연말에 집중되는 업무 를 분산시킴으로써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량 경감	치 산 과 (042- 481-4275)
18. 소나무류 이동단속	<신 설>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조사 실시	○시 책 (2006.1.1)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 제한	소나무재선 충병방제팀 (042- 481-4268)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 위주로 방제작업 실시</li> <li>○ 예방주사 시범실시 - 대상면적 : 23ha</li> <li>○ 방제제품 조달품목 - 항공약제 1종</li> <li>○ 자체 연구</li> <li>○ 항공방제 : 연 3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구역 모두베기 후 파쇄·소각 처리 확대 실시</li> <li>○ 예방주사 본격 실시 - 대상면적 : 520ha</li> <li>○ 방제제품 조달품목 확대 - 예방주사 약제, 훈증비닐, 대량조사장비(RT-PCR)</li> <li>○ 재선충병 연구사업단 구성·운영 - 연구비 : 20억원</li> <li>○ 항공방제 : 연 5회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2006.1.1)</li> <li>○ 시 책 (2006.1.1)</li> <li>○ 시 책 (2006.1.1)</li> <li>○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4조 (2006 상반기)</li> <li>○ 시 책 (2006.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선충병 재발 방지</li> <li>○ 예방 방제</li> <li>○ 방제제품 규격화</li> <li>○ 방제방법 개발·적용</li> <li>○ 예방 방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 (042-481-4076)</li> <li>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 (042-481-4068)</li> <li>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 (042-481-4076)</li> <li>“</li> <li>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 (042-481-4068)</li> </ul>

사업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규정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20. 산림병해충 방제	<신 설>	○주택가 주변 등 지상 방제	○시 책 (2006.1.1)	○예방 방제	소나무재선 충병방제팀 (042- 481-4068)
	<신 설>	○피해지역외 감염신고목 제거 (30천본)	○시 책 (2006.1.1)	○예방 방제	〃
	<신 설>	○방제작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시범 실시		○책임 방제	〃
	○산림병해충병 예산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포괄 운영	○시 책 (2006.1.1)	○지역 실정에 맞게 산림병해충별 방제 실시	소나무재선 충병방제팀 (042- 481-4064)
<신 설>	○솔잎혹파리, 재선충병 천적 방사	○시 책 (2006.1.1)	○생물학적 방제방법 으로 방제성과 제고	〃	





<http://www.forest.go.kr>